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서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60

발의연월일 : 2026. 10. 30.
발 의 자 : 하서영 의원(1명)
찬 성 자 : 안종숙·김해바른·정민우
박성준·김형우 의원(총5명)

1. 제안이유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인용 법령을 현행화하고, 어린이집을 환경교육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인용 법률명을 현행화함(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나. 학교환경교육 지원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보육교직원 연수 및 어린이집 환경교육 교재·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다. 환경교육센터 재정지원과 관련한 인용조문을 현행법상 지역환경교육센터 체계에 맞게 정비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제16조, 제25조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제2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조례안 예고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을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이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구청장은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교원·담당직원·봉사자”를 “교원·보

육교직원·담당직원·봉사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을 “학교 및 어린이집의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종전의 제10호) 중 “학교환경교육”을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으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및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활용·지원”을 “환경교육사 등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활용·지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환경교육센터(법 제1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으로부터 지정된 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를 포함한다)”를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환경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이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1.·2. (생 략)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3. 환경교육 담당 교원·담당직원·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	4. ----------담당교원·보육교직원·담당직원·봉사자---
<신 설>	5. 학교 및 어린이집의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삭 제>
5. ~ 9. (생 략)	6. ~ 10. (현행 제5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10.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11.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및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활용·지원	3. 환경교육사 등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활용·지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법 제1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으로부터 지정된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 ---------- ---------- ----------. ②·③ (현행과 같음)

[붙임]

관 계 법 령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5.10.01.)

제2조, 제10조, 제16조, 제25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2023. 12. 26., 2025. 10. 1.>

1.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유치원의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의2.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체험·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환경교육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환경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서영의원 발의) 서명부

발 의 자		찬 성 자	
의 원 명	서명.날인	의 원 명	서명.날인
하 서 영		안 중 숙	
		김 해 바 른	
		정 민 우	
		박 성 로	
		김 형 수	